자동계좌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펌뱅킹/금결원CMS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출금하여 대체 납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책임)
① 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됩니다.

제6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별첨> 자동이체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②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 해지)
①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약관-005호

② 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요청대로 출금을 하며, 출금 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② 출금금액과 출금일자의 정당여부는 납부자와 이용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용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기관에 신청 시 약관 적용)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5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제16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펌뱅킹/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납부자가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 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별첨.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1) 요구불간자동이체
2) 여신상환
3) 여신이자수입
4) 하나카드자동이체
5) 지로자동이체
6) CMS자동이체

7) CMS자동이체(당일출금)
8) 아파트관리비(금융결제원, 이지스효성)
9) 월부금자동이체
10) 펌뱅킹자동이체
11) 아파트관리비(일괄출금)
12) 일일상환서비스원금
13) 일일상환서비스이자

※ CMS자동이체(당일출금) 업무는 13시에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동이체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펌뱅킹자동이체는 업체에서 출금의뢰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따라 자동이체우선순위가 아파트관리비(일괄출금)와 바뀔 수 있습니다.
※ 납부자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파일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00 에 1회만 처리되며, 부분이체는 불가합니다.
※ 18시 이후 입금시 자동이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